

없다"고 말했다. 합의하는 업체엔 곧바로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업계에는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전했다. 또 합의를 작성하지 않으면 입찰 참여에서 제외시키고, 작업 중인 구역에 다른 업체를 투입시켜 압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오 사장은 "10척의 컨테이너 탑재블록 공사를 마치고 나니 남은 것은 은행 빚 4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업체가 임금 지급을 제때 하지 못해 노동자로부터 시달리는 모습을 지켜보다 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액수로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는 악질 수법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 ■ 한진중 "흠집 내기다"

한진중의 하청업체인 한승이엔지 강정훈 사장도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선박 10척의 도장작업을 맡았다. 강 사장 역시 추가 작업으로 발생한 비용 2억원을 청구했지만 한진중 측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강 사장은 "협이가 어려운 상황이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하청업체의 상황을 대기업에서 악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청업체들은 "원청의 갑질로 공기를 줄이기 위해 28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도 하청은 공사를 강행한다. 정규직은 더우면 일 안 한다. 하청에서 각종 수칙 위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사고가 하청에서 일어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진중공업은 "협력업체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진중은 "조선소 하도급 계약은 특성상 법규와 절차에 따라 공개 경쟁 입찰로 이뤄지고 있어 '선시공 후계약'은 존재할 수 없다"며 "흠집 내기"라고 주장했다. 턱없이 적은 기성금을 제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한진중은 "기성금액은 해당 공사의 계약금액 내 협력사의 월별 공정 진행률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적게 기성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진중은 "선행공정이 지연될 경우 사전에 작업일정을 통보해 협력사에서 대응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선행공정 지연으로 인해 긴급공사를 할 경우 추가 비용을 별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업체의 요구 비용은 계약 종료 시 상호 협의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민씨텍의 경우 공사 완료 후 부적합 사항 등 추가 작업분에 대해 서로 합의한 뒤 1억7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중은 "하자보증금 유보금을 6개월 이상 미지급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관련 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합의서 미작성 시 입찰에서 제외하고 작업 중인 구역에 임의로 타 업체를 투입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정별로 생산, 경영, 작업 능력을 검토해 입찰을 진행하며, 모든 작업은 해당 업체와 계약 체결 후 진행하므로 작업 중인 구역에 우리가 임의로 다른 업체를 투입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